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 금지>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67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 해당 공공기 관에 이첩 금지	2
※ 참고자료 : 공공기관장에 대한 신고(권익위 접수) 처리 현황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훈기의원 등 27인
2. 제 안 일 : 2024. 10. 18.
3. 회 부 일 : 2024. 10.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게 되면 제대로된 조사 또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 금지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라면 해당 공공기관에 신고를 이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생략)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u>. 다만,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8조제1항1)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①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②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③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함)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2조제1호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국립·공립학교 등임.

□ 그리고 현행법 제19조는 신고대상 기관 중 권익위 이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도록 하고, 권익위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신고를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함.³⁾

□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신고를 이첩함에 있어서 피신고자가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으로 이첩하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 또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권익위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하는 경우 피신고자가 공공기관의 장이라면 해당 기관에 이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기관장 관련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대응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해당 공공기관으로의 이첩 금지만 규정하고 이를 대신할 이첩 대상기관을 적시하고 있지 않은데,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첩의 대상이 되는 조사기관을 명확히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제1호),
- ②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제2호),
- ③ 그 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 기관에(제3호)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형사처벌 조항 위반이 아니어서 수사대상이 아니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한 사항도 아니면서,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⁴⁾에는 현행 법령상 해당 공공기관 외에 이첩 대상기관이 존재하지 않음.

- 현행법은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 중 수사기관, 감사원, 공공기관, 감독기관 등에 조사기관으로서의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권익위에는 조사기관에 신고를 이첩하거나 재조사를 요구⁵⁾하는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권익위가 직접 사건을 조사할 수도 없음.

○ 이러한 점에서, 법 위반 신고사건을 해당 공공기관으로 이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이를 대신할 조사기관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4) 현행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중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의회가 대표적이며,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일부 공직유관단체도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종합하면, 공공기관장에 대한 신고를 해당 기관에 이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관장의 이해충돌 관련 조사가 보다 엄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취지가 타당한 입법으로 보이나, 해당 공공기관을 대신할 이첩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권익위는 개정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유형,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이첩할 조사기관을 결정할 수 없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 이첩되는 경우에 공공기관장은 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상벌에 관계되는 직무에 대해 회피⁶⁾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신고자인 기관장에 대한 조사와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 감사원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감사원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 해당 기관에 이첩이 금지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나 감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들 기관은 신고사항 이첩 금지대상인 “위법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07

참고

공공기관장에 대한 신고(권익위 접수) 처리 현황

연도	건명	이첩 대상 기관	처리 결과
2022년	공직유관단체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수사기관, 감독기관	이첩 ⁷⁾
	국공립학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	종결 ⁸⁾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	종결
	중앙행정기관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	종결
	중앙행정기관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	종결
	지방의회의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해당기관	송부
2023년	중앙행정기관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	종결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	종결
	공직유관단체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	종결
	공직유관단체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	진행중
	중앙행정기관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	종결
	지방의회의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해당기관	송부 ⁹⁾
	국공립학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감독기관	송부
2024년	공직유관단체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해당기관	송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	종결
	국공립학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	종결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	종결
	공직유관단체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	종결
	지방의회의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	종결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감독기관	송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감독기관	송부
	공직유관단체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	종결
	공직유관단체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	종결
	지방의회의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	진행중
	공직유관단체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	진행중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7)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8)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9)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

1. 제1항에 따른 이첩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